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	----

제출년월일 : 2003.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평창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확정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
 -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
- 나.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감면축소 및 폐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간으로 축소
 -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 별장감면 폐지
- 다.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감면 억제 및 소폭 확대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소폭 확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민임대주택까지 소폭 확대
- 라.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
 -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면제에서 50%경감
 -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5년간 면제에서 5년간 50% 경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

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 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고층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

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1(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사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평창 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
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
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
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
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
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
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한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면내용	세 목	년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합 계			
감면사유	평창군세감면조례 제 조			
<p>평창군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p> <p>평 창 군 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條 (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老人住居福祉施設
2. 老人醫療福祉施設
3. 老人餘暇福祉施設
4. 在家老人福祉施設

□ 문화재보호법 제4條 (寶物·國寶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寶物에 해당하는 文化財중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價値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6條 (史蹟·名勝·天然記念物の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記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 향교재산법 제2條 (鄉校財産의 定義) 이 법에서 鄉校財産이라 함은 鄉校의 維持運營을 爲하여 造成된 動産, 不動産 其他 財産을 말한다.

□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第29條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①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第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등)

①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개정 2001.12.29>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併하여 당해 合併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併前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等"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년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⑥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⑦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外國投資家 또는 外國

人投資企業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⑧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 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⑨外國人投資促進法 第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⑩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6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申請期限이 경과한 후 減免申請을 하여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申請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의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稅額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⑪大韓民國國民(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大韓民國法人(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의 讓渡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을 받을 수 있는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에 대한 大韓民國國民등의 株式所有比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租稅減免對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⑫제1항제1호에서 規定하는 사업에 대한 外國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外國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기간·공제기간 및 減免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減免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1. 外國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대상인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減免한다.

2. 外國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外國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減免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減免하되, 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減免한다.

3. 外國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減免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減免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減免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